



EU와 미국, 그린워싱 규제 동향

- 보다 철저한 규제 속속히 등장 -

사실은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소비자에게 이목을 끌기 위해 자신을 친환경적이라고 허위로 또는 충분한 근거없이 주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규제는 연일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한 바 있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도 10월 중으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린워싱 규제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EU와 미국 또한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삐를 조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EU의 의회와 이사회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친환경 표시 규제 법안에 합의하고, 의회가 세계 최초로 녹색채권 표준을 승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그린 가이드 개정을 검토 중에 있고,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그린워싱 관련 투자자에게 오해를 주는 여지를 없애고 규제하기 위해 펀드 마케팅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1. EU 동향

EU의 의회,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는 2023. 9. 19. 그린워싱 방지와 제품 내구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재를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표시와 관련한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EU의 사업체들이 준수해야할 금지사항들에 그린워싱과 관련한 마케팅 행위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들의 기만적인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좀 더 나은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위 추가되는 규제에 따라 그린워싱과 관련하여 EU의 사업자들은 “친환경적인(environmentally friendly),” “자연적인(natural),” “생분해적인(biodegradable),” “기후중립적인(dimate neutral),” “에코(eco)” 등의 표현을 실제 환경 분야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 등의 증거없이 기재할 수 없으며, 탄소상쇄(carbon offset)를 언급하며 제품이 환경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기재 또한 금지됩니다. 그리고 적합한 공공기관 등이 인증하지 않은 지속가능성 관련 인증라벨 등을 붙이는 것 또한 제한됩니다.

위 법안의 합의 이후, EU의회의 의원이자, 위 법안 관련 조사위원인 빌라냐 보르잔(Biljana Borzan)은 “...우리는 입증될 필요가 없을 환경적 주장과 관련한 혼돈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배출 상쇄에 근거한 주장은 금지될 것입니다(...we are clearing the chaos of environmental claims, which will not have to be substantiated, and claims based on emissions offsetting will be banned).”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탄소를 감축하지 않고 자발적 탄소 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에서 구매한 상쇄 크레디트를 이용해 자사 제품에 ‘탄소중립’과 같은 표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EU의회와 이사회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의회 투표는 2023. 11.에 있을 전망입니다. 순탄하게 이 과정이 진행된다면, EU회원국들은 향후 2년간 본국 법률에 해당 규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EU의회는 2023. 10. 4. 세계 최초로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자발적 기준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ESG투자자들을 위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린워싱의 가능성이 있는 기후친화적 주장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은 자발적이고, 세계 최초인만큼 관련 시장에서 그 유용성을 검증받을 예정이며, 만약 업계에서 널리 이용되면 녹색투자 자본 조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2. 미국 동향

미국에서는 우선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그린 가이드를 개정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린 가이드는 그린워싱 규제를 통해 환경친화적 제품을 구매하려는 미국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992년에 처음 공개되었고, 1996년과 1998년에 개정되고, 다시 2012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를 다시 개정하기 위해 2023. 5. 23. "쓰레기: 재활용 가능한 것과 그린 가이드(Talking Trash: Recyclable Claims and the Green Guide)"에 대한 세미나를 주최하고 관련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3. 6. 13.까지 약 7,000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연방거래위원회는 검토를 거치고 있으나, 과거 2012년 개정도 2007년부터 시작했던 점과 여러 사업체들의 반발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짧은 시간 안에 개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2023. 9. 20. 펀드명과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가 일치하도록 하는 규칙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는 20여년 만의 규칙 개정으로, 펀드명과 투자자산 80%가 일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SG펀드가 무늬만 ESG이고 사실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화석연료업체에 투자하는 등 유사한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ESG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다른 분야의 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린워싱을 방지할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시사점

ESG경영을 실시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환경을 표방하며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실제로는 별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가짜 친환경의 그린워싱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 문제는 국가의 규제와 기업체의 자율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여러 비판이 나오면서 관련 규제가 지속 강화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EU의 법안이 한때 주목받았던 탄소상쇄에 대한 기재마저도 금지한다는 점은 제품이 친환경적이라면 제품 생산 등에 있어 보다 직접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산업계에서는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법적 리스크 감소를 위한 대응의 필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참고-그린워싱 관련 화우 뉴스레터

- 그린워싱 규제 강화 개정「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시행(23.09.)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1629>
-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표시, 광고 규제 동향(23. 06.)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1502>

- COP27, 그린워싱 관련 보고서 발표(22.11.)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1146>
- 그린워싱 국내외 동향 및 관련 기업 사례(22. 06.)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0858>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미국변호사

T. (+82) 2 6182 8502
E. synn@yoonyang.com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강석준
변호사

T. (+82) 2 6182 8505
E. kangsj@yoonyang.com

김정남
수석컨설턴트

T. (+82) 2 6003 8559
E. jinkim@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T. (+82) 2 6003 7674
E. hyang@yoonyang.com